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26.3.5.)·시행(‘26.7.1.)예정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6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0조(「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단서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별표 2의 1급서의 등급 산정 기준란 중 “특별시·광역시·도청”을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청”으로 한다.

제11조(「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3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광주, 전남”을 “전남광주”로 한다.

제14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

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별표 3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염처리자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인)
처리방법		
면 적	m ²	
방염성능검사	제 호 (년 월 일)	

제15조(「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을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의 개정)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다.

제17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18조(「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19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통합특별시 부분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 시	경기 도	강원 특별 자치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북 특별 자치 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특별 자치 도
총계	6,773	7,552	6,168	3,781	3,043	3,428	1,642	1,429	609	11,559	4,466	2,898	4,289	3,534	5,558	5,576	1,241
소방 준감 이하	6,773	7,552	6,168	3,781	3,043	3,428	1,642	1,429	609	11,559	4,466	2,898	4,289	3,534	5,558	5,576	1,241

비고: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제4호 및 제61조제3항을 시범 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17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별 경찰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 시	경기 도	강원 특별 자치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북 특별 자치 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특별 자치 도
총계	72	4	8	4	4	4	4	4	4	8	4	4	4	4	4	4	4
경감	72	4	8	4	4	4	4	4	4	8	4	4	4	4	4	4	4

제20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 <u>치도</u>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 및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정보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①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생략)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	②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 -----

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생략)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① ~ ③ (생 략) ④ 소방청장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 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특별시장·통 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u> ----- ----- ----- -----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 ④ (생략)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광역시· <u>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⑤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특별자치도</u></u> ----- -----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등) ① 소방청장,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등) ①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u>특별시</u>	2. ----- <u>특별시</u>

· <u>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u>(이하 “시 · 도”라 한다) 소속인 경우: 시 · 도지사 ② 삭 제 ③ (생 략)	· <u>통합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u>----- ----- -- ③ (현행과 같음)
---	---

소방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급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급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 ----- ----- ----- --.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생략)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장한다.	②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② (생략)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 ----- <u>특별시장</u> <u>·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① (생략)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향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u>특별시장</u> <u>·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 ----- ----- -----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u>사</u>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제2조(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특별 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① ----- ----- ----- ----- ----- ----- -----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 -----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 ----- ----- -----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략) ②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탕크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u>(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과 같음) ②-----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 -----. ③ (현행과 같음)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u> <u>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 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 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 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 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 여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u>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u> <u>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u> <u>특별자치도지사</u> -----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은 <u>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u> <u>치시 · 도</u>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 한다.	④ ----- ----- ----- ---- <u>특별시 · 통합특별시 · 광역</u> <u>시 · 특별자치시 · 도</u>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 -----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 ----- ----- ----- ----- ----- ----.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생략)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

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 -----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생략)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 ----- ----- ----- ----- --.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① ~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내용·시기·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이하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

[illegible]

외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⑨ (생략)	----- ----- -----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④ ~ ⑨ (현행과 같음)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① ----- ----- ----- -----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